



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

[시행 2015.4.1] [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-13호, 2015.3.12, 폐지제정]

여수지방해양수산청(선원해사안전과), 061-650-6049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해사안전법」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에서 항행 선박의 종류별 속력을 제한하여 해사안전(海事安全)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고시는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(국가어항)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불가항력이나 조난 등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항행속력 제한해역 등) 이 고시에 의한 항행속력 제한해역,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은 [별표 1]과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2015-13호, 2015.3.12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전 고시의 폐지) 중전의 「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(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-29호, 2012.3.27)」는 이를 폐지한다.

[별표 1]

항행속력 제한해역,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(제3조 관련)

| 항행속력 제한해역 |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 | 비 고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다음 각호의 기점(세계측지계 WGS-84)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</p> <p>(1) 북위 34° 43′ 49.5″ 동경 127° 43′ 58.0″</p> <p>(2) 북위 34° 43′ 32.0″ 동경 127° 43′ 58.0″</p> <p>(3) 북위 34° 43′ 16.0″ 동경 127° 43′ 07.0″</p> <p>(4) 북위 34° 43′ 27.9″ 동경 127° 42′ 58.9″</p> | <p>1. 고속여객선 (위터제트, 공기부양여객선 등) : 15노트 이하</p> <p>2. 상기1호 이외의 모든 선박 : 10노트 이하</p> | <p>해도(NO. 251) 참조</p> |